의안번호	제 507 호
의 결 연 월 일	2016년 월 일 (제 회)

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6년 11월 22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507

제출연월일 : 2016년 11월 22일
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1. 제안사유

○ 「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」 시행에 따라 2015년부터 장학금 예산을 대학회계로 편성·운영 중으로

○ 대학회계와 장학기금간 중복 운영에 따른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장학기금을 폐지하고 대학회계와 통합 운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제4장 장학기금 삭제(안 제20조부터 제26조 까지)

3. 의안전문 : 붙 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 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 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　　호

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장 장학기금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를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장 장학기금	<삭 제>
제20조(기금설치) 대학에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,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장학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에 의거 장학기금 (이하 “기금“이라 한다)을 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	<삭 제>
제21조(기금조성)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1. 대학의 입학금 및 등록금 징수액의 10%내외 2.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. 외부장학재단, 공공기관 및 개인의 미지정 장학기탁금	<삭 제>
제22조(기금의 용도) 조성된 기금의 사용은 우리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의 장학금 지급에만 사용한다.	<삭 제>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기금의 운용관리) ① 기금은 대학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,여유자금은「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. ② 기금관리운용을 위하여 “장학기금“ 계좌를 별도 개설하여 관리·운용한다. ③ 제2항의 효율적인 기금운용·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, 기금출납원을 두며, 기금운용관은 총장으로 하고 기금분임운용관은 학생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학생업무담당주사으로 한다. ④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,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총장이 정하는 필요한 서류와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운용하여야 한다.	<삭 제>
제24조(장학금 지급) 장학금의 지급범위, 대상자선정, 지급방법, 지급금액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	<삭 제>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(보고)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	<삭 제>
제26조(준용규정) 장학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「지방재정법」및「충청북도 재무회계규칙」을 준용한다.	<삭 제>

관계법령

개정조문	관계법령	주 요 내 용
제20조 부터 제26조 까지	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	제25조(회계 간 전입·전출) ①국립대학의 장은 각 회계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별한 목적사업·수익사업 또는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학회계,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발전기금의 회계 및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회계 간에 재원의 일부를 전입·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대학회계의 재원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.(이하생략)
	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	제15조(기금의 통합·폐지) 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 1.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.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.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.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.